

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3 일	
신고인	법인명(상호)			신고번호	
	소재지			전화번호	
	대표자의 성명			(서명 또는 인) 생년월일	
	주소			전화번호	
	전자우편주소			사업자등록번호	
	인터넷도메인 이름			호스트서버 소재지	
신고 사항	변경 전				
	변경 후				
변경 사유		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12 조제 2 항, 같은 법 시행령 제 16 조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9 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 ※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. 공정거래위원회 귀하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			
신고인(대표자) 첨부서류		1.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. 통신판매업 신고증(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 ※ 신고증을 분실 · 훼손한 경우에는 아래 하단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			수수료 없음
		[신고증 분실 · 훼손 사유]			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	1.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)			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					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 36 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 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 2 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신고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					
처리절차					
신고증 신고서 작성 → 접수 → 검토 → 신고 수리 → → 신고증 재교부 변경사항 기재 신고인 처리기관: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 · 특별자치도 · 시 · 군 · 구					